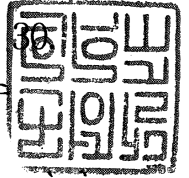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1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6. 30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의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통보에 따라 헌법 및 실정법 위반으로 해석 가능성이 있는 본 조례의 수상이용시설 이용제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11조제2항 중 ‘정신질환’ 삭제(안 제11조제2항)

-“이용객이 정신질환,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다고 인정될 때”를 “이용객이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다고 인정될 때”로 함

나. 해당용어를 삭제하여도 동 조례 제11조제4항으로 보완됨

-“그 밖의 사유로 수상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”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(1) 「대한민국 헌법」 제10조, 제11조

(2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2. 5. 30.~ 6. 20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이용객이 정신질환,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다고 인정될 때”를 “이용객이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다고 인정될 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이용의 제한) 1.(생략) 2. 이용객이 <u>정신질환, 감염병 또는</u>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다고 인정될 때 3.(생략) 4.(생략)	제11조(이용의 제한) 1.(현행과 같음) 2. 이용객이 <u>감염병 또는</u>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다고 인정될 때 3.(현행과 같음) 4.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대한민국 헌법

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.

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제69조(권익보호)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, 고용,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